

유가연동제의 필요성과 실시요령

1. 현행 국내유가관리제도의 개요

- 국내석유산업 전반에 걸쳐 비교적 강력한 정부규제 존재
 - 최고가격고시제, 수출입승인제, 정유업 신규참입허가제, 주유소 거리제한 등
- 석유가격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결정하여 고시
 - 정유사 허용이윤을 세후 자기자본 이익율 10% 수준에서 허용
 - 유통업체 판매수수료도 정부가 고시
 - 석유사업기금에 의한 유가완충 실시

<배경>

- 수급안정 : 전량 수입에 의존, 초창기 외국회사에 의존
- 가격안정 : 국내물가관리 수단으로 활용
- 과거제도의 전통 : 해방후 배급제로 시작, 1.2차 석유위기시 통제 강화
- ※ 외국의 예
- '80년대 중반이후 전반적으로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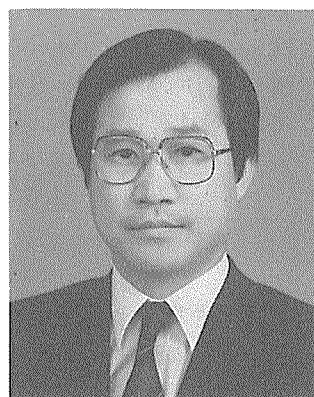
유가격 자유화 추세

- 최고가격규제 : 프랑스(1982년 이전), 이탈리아(1982년이전), 호주(도매가격), 벨기에
- 연동제 : 프랑스(1982년 ~ 1985년), 이탈리아(1982년 ~ 1991년), 스페인, 그리스
- 자유화 : 프랑스(1986년이후), 이탈리아(1991년이후), 일본, 독일, 미국, 영국, 기타 EC 국가(1992년이후)

2. 현행 제도의 평가

장 점

- 물가관리의 수단이 될 수 있음(물가가중치 : 도매 54.9/1,000, 소비자 19/1,000)
- 국제유가 급등락시에도 국내유가 안정으로 경제안정에 기여
- 유가를 일정기간 고정시킬 수 있어 경제주체들의 예측을 가능케 함
- 특정산업지원등 정책수단으로 활용가능
- 과점시장 하에서 가격담합인상을



韓 墉 震

<상공자원부 석유가스국장>

<정유사 손실보전소요 추이>

(단위 : 억 원)

1990년말	1991년말	1992년말	1993년말(추정)
6,270	3,286	4,763	500

방지하고, 전국균일가격 유지 가능

문제점

○ 유가제도 개선(자유화) 필요성

- 가격기능 약화로 자원배분 효율성 저해 우려
- 국내유가 급등시에도 국내유가 저 가유지로 석유소비절약 분위기 저 해(결프사태시 국내유가 완충결 과 1990년 석유소비증가율 24.1%)
- 유종별 국제가격구조는 변화하는 데 국내가격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양자간 격차 발생으로 비정상적 수출입 유인 발생 → 수출입통제 필요
- 경제자유화·개방화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유통제 등 강한 정부규제로 인해 석유산업 자체의 대외경쟁력 약화 우려
- 가격조정시 조정요인의 인위적 누적에 따른 일시대폭조정으로 경제 충격 심화
- 단기적 물가안정 위주의 정책이 되기 쉬워 석유산업의 합리적 육 성 저해
- 정유사 손실보전소요의 만성적 누적, 가격구조의 왜곡 등으로 중질 유분해·탈황등 고도화시설 투자 지연

3. 유가제도개선 방향 및 실적

가. 기본방향

- 시장기능 활성화로 자원의 최적배

분이 이루어지도록 석유산업 자유화 지속 추진

- 정부역할은 직접규제에서 시장기 능 보완차원의 사후적 간접규제로 전환
- 이러한 석유산업 자유화의 일환으 로 가격도 자유화
- 가격자유화 실시의 전단계로서 유 가연동제 실시

나. 그동안의 추진 실적

<가격> : '80년대초 이래 점진적 가격 자유화 추진

- 1993년 말 현재 11개 유종중 6개유 종 45% 물량이 불완전한 형태로 자유화
- 자유화유종 : 휘발유, 등유, 나프타, 항공유, 용제, 아스팔트
- 단, 휘발유·등유는 자유화 이후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가격을 행정지도하여 오다가 '94. 1. 1 가격조정시 유가연동 제 대상품목으로 포함시킴

<산업> : '91년부터 석유산업 행정 규제 점진적 완화

- 가격자유화 유종은 수출입도 원칙적으로 자유화
- 정제시설 신증설 요건 완화
- 주유소 거리제 한 완화(6대도시는 거리제 한 폐지)

다. 앞으로의 추진 방향

- 유가연동제 실시결과를 보아 문제 점 보완후 빠른 시일내에 전유종 자유화 실시
- 가격자유화 진전에 맞추어 석유산 업 전반의 행정규제 완화

4. 유가연동제의 내용

가. 개념 및 목표

개념

- 석유제품의 가격이 원가요소(원유가, 환율등)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유가제도

목표

- 유가 전면 자유화의 전단계로서 유가자유화의 무리없는 실시 여건 조성
- 각 경제주체가 유가의 잦은 변동에 적응
- 유가자유화 초기의 유가결정준거 제공
- 유가전면자유화를 위해 필요한 가격구조국제화등 사전조치의 시간 확보

※ 運動制를 독립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볼 수도 있으나, 현 단계에서 우리의 정책목표는 유가전면 자유화이므로 연동제는 자유화의 과도기적 수단으로 인식

시행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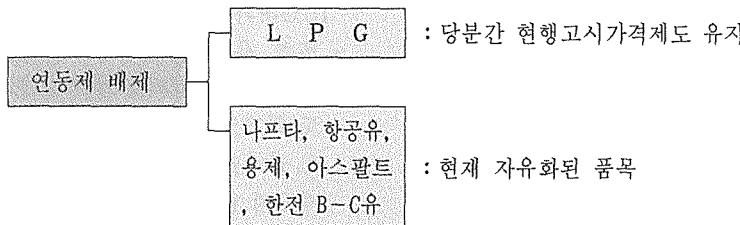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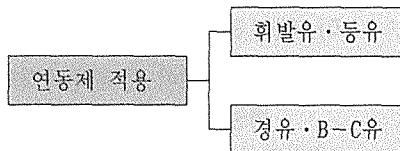
- 각 경제주체가 잦은 유가변동에 적응할 수 있고, 유가구조 조정등 자유화여건 조성이 가능한 기간
- 자유화를 위한 과도기에 불과하므로 되도록 짧은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연동제는 그 자체로 훌륭한 유가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으

므로 유가자유화가 늦어질 경우
수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할 가능성
도 있음

나. 연동제 실시방안

(1) 시행시기

- 1994. 1. 1. 유가조정시 유가연동
제를 실시키로 하였음
- 다만, 연동제에 의한 최초 유가조
정일은 1994. 2. 15일이 될 것임
- (2) 대상유종
- 연동제에 의한 가격변동 대상유종
은 휘발유 · 등유 · 경유 · B-C
유로 함
- LPG는 수입비중이 크고(76%),
LNG와의 형평성유지가 필요한점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분간 현
행 고시가격제도 유지
- 기타 현재 가격이 자유화된 유종
은 연동제 대상에 배제함



국내석유제품 복합단가	=	원유비 + 환율(환차손 포함) + 관세 + 정액기금 + 정제비 + 원유도입금융비 + 기타
-------------	---	---

(3) 유가연동제 하에서의 가격 수준

- 국내유가의 평균수준은 석유제품
의 원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

<원유비> : FOB, 운임, 보험료,
부대비, 연료감모를 포함
- FOB는 전월 국내원유도입 평균
실적, 보험료 · 부대비는 전년
실적, 연료감모는 5년에 1회 산
정 반영 (현재 3.68%)

<관세> : 현재 할당관세 2% (기본
관세 5%)

- 전월 적용 실적을 반영하되, 전
월 중에 관세 변경시는 물량가
중 평균치 적용

<기금> : 정액기금으로 운영 (현재
1.7 \$/B)

- 전월 적용 실적을 반영하되, 전
월 중에 기금 변경시는 물량가

증 평균치 적용

<환차손익> : 현재는 연말에 기금
으로 정산하고 있으나, 연동제에서
는 공식에 반영

- 환율의 단기적 변동에 의한 유
가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환차손
익은 전월 1개월 대신 3개월간
의 환율변동을 기준으로 반영

<정제비> : 매년 표준정제비 개념
으로 산정하여 선반영

- 정제비란 정유사비용 중 원유도
입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비용
(감가상각비, 판매 및 일반관리
비, 수송저유비, 영업외비용 등)
을 말함

<원유도입금융비> : 원유도입시
사용하는 USANCE금융의 이자(국제
금리수준)

- 전년 실적에서 금년도 유전스
감축계획분(10일) 차감후 반영

<기타> : 가스안전관리기금(12원/
B), 품검수수료(11원/B) 등 전년실
적 적용

◦ 유종별 가격차이는 국제시장가격,
에너지절약, 산업정책측면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되,

- 유가전면자유화 준비를 위해 국내
공장도가격이 국제가격에 접근토
록 점차 조정

※ 1994년 1. 1. 가격조정시 국내공
장도 가격을 국제가격구조로 다소
접근시켰으나 아직도 차이가 큼.

(4) 유가연동 공식

- 유종별 · 유통단계별 최고가격이
연동제공식(별첨 고시안 참조)에
의해 고시됨

세전공장도

- 유종별 연동기준가격(세전) $\times (1 + \text{당해월 조정요인})$
- ※ 당해월 조정요인 = 도입원유가와 환율의 변동비율 + 직전 3개월간 환차손익 변동비율

세후공장도

- 유종별 세전 공장도 + 특별소비세 액(휘발유, 경유는 교통세액) + 부가가치세액
- ※ 휘발유·등유·경유는 다소 수요 자에 대한 소량 판매가 대부분임을 고려하여 세후공장도의 리터당 가격을 소�数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가격표시상 1원 미만의 단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함.

유통수수료

- : 매월 변하지 않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정액으로 고시되어 고정됨
- ※ 현재 휘발유·등유·경유의 유통수수료는 원단위로 표시되어 있음 (리터당 유통수수료에 1원 미만의 소�数점이하 수치가 없음)

소비자가격

- = 세후공장도가격 + 유통수수료
- (5) 연동주기 : 월 1회 (매월 15일 0시에 자동적으로 가격변동)
- 1980~1992년 약 12년간의 원유가·환율 자료 분석 결과 월 1회

변동기준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 유가가 자유화된 일본의 경우도 공장도가격은 매월 1회 변동되고 있음.

- 연동제 시행 상황에 따라 연동주기 수정

(6) 연동폭 : 무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등락할 경우(예 : 걸프사태) 필요시에는 정부에 의한 유가완충이 가능토록 운영

- 원칙적으로 유가연동제 실시후에는 기금에 의한 유가완충은 불가하며, 기금은 정액으로 정수하여 에너지사업에 활용하여야 함.

- 그러나, 걸프사태와 같은 비상시기에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등락할 경우 유가완충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유가완충 기능은 유지

(7) 운영방법

- 매월 15일 0시에 가격이 변동되도록 함.

- 석유협회는 매월 유종별 최고가격을 연동제공식에 따라 계산하여 상공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득한 후 14일 까지 언론기관에 발표
 - 전월 실적집계에 약 10일 소요 예상

-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월 10일 까지 전월 원유도입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잠정치로 계산하여 확정치와의 차이는 다음 달 가격계산시 반영

- 석유연동가격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협회내에 『석유가

격조정심의위원회』를 두는 방안은 그 필요성을 좀 더 검토키로 함

- 석유협회는 자의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된 연동공식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계산하여 발표하는 것에 불과하며, 발표 전에 상공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득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가격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연동제공식상 원유비·환율 이외의 비용은 필요시 수정 반영

- 정제비, 금융비, 운송비 등 연동공식상의 상수부분은 年1회 수정 원칙

- 정제비 자체반영에 따른 손익, 수출입 손익 등 연동제공식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익년도의 기준가격조정 등으로 반영

다. 예상 문제점 및 보완대책

(1) 유가영향이 큰 관련가격의 변동 문제

- 유가영향이 비교적 큰 교통요금등에 있어서도 유류의 원가구성비는 10%내외에 불과

- 또한, 유가연동제하에서 국내유가는 매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므로 유가변동이 있다하여도 곧바로 관련가격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고 어느정도 자체완충될 전망

(2) 소비자 및 타산업부문의 적응 문제

- 빈번한 유가변동에 대해 소비자 불만 가능성

	유류의 원가구성비	유가 10% 변동시 가격영향
시내버스	11.4%	1.1%
시외버스	9.8%	0.9%
택시요금	9.0%	0.9%
열차요금	7.8%	0.8%
목욕요금	19.5%	2.0%
외식비	6.1%	0.6%
전기	8.0%	0.8%

- 관련산업에서 연료비 예측 곤란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유가변동에 적응할 것이며, 유자유화 이전에 유가변동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연동제의 한 목적이 라. 유가연동제와 함께 실시할 유자유화 여건조성시책

(1) 손실보전 완료

- 유가연동제를 실시하면 정액기금 이외의 추가적 기금징수는 어려울 것이므로, 연동제 실시 이전에 기존의 정유사 미지급금에 대한 대책 확립 필요
- 1993년 말 손실보전소요 잔액 약 500억원 추정
→ '94 기금운영계획상 유가완충 재원(1,250억원)으로 보전
- (2) 유종간 가격구조 조정

필요성

- 유자유화시 유종간 가격구조가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충격을 완화
- 유자유화에 따른 수출입자유화 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의 괴리로 인한 비정상적 수출입 유인 제거

조정방법

- 국내 공장도가격구조가 국제시장 가격구조에 점진적으로 접근토록 개편 → 휘발유·등유 공장도가격은 상대적 인하, 경유 가격은 상대적 인상

- 1차로 1994.1.1 석유류 특소세 개편시 가격구조를 일부 조정한 바 있으나,

- 2차로 1994.2.15 유가연동제에 의한 최초가격조정시 가격구조를 좀더 국제가격구조로 접근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임.

- 그 이상의 가격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유가연동제에 의해 매월 가격이 변동될 때 유종별 가격구조를 점진적으로 조정

(3) 매점매석 문제

- 경제주체들이 유가조정의 시기와 폭을 사전에 알게 되므로 가격인상시에는 매점매석으로 인한 유통

<국내가와 수입가 비교>

(단 \$/B, '94.1)

	휘발유	등유	경유(저유황)	B-C유(저유황)
국내세전공장도	39.97	35.69	27.81	16.50
수입도착가 *	23.55	27.43	25.80	17.18
('93 수입비중, 잠정, %)	(11.9)	(37.0)	(9.3)	(30.4)

* 수입도착가는 '94.1월 싱가포르가격에 운임, 보험료, 관세, 기금 등 수입부가비용 고려, 단, 판매 및 일반관리비 등 도착후 비용은 불고려

= 아 래 =

(단위: 원/㎘)

가격연동석유제품	연동기준가격(세전제조장반출)
무연휘발유	203.64
등유	181.82
저유황경유(0.2W%)	141.67
경유	137.12
저유황경질증유(1.0W%)	121.20
저유황경질증유(1.6W%)	119.22
경질증유	116.04
저유황증유(1.0W%)	99.97
저유황증유(1.6W%)	97.56
증유	87.93
저유황B-C유(1.0W%)	84.05
저유황B-C유(1.6W%)	80.61
B-C유	66.58

* 단, 가격구조의 국제화를 위해 연동기준가격 조정을 추진중임

혼란 가능성이 있으며, 인하시에는 소비자들이 구매시기를 지연시키게 될 것임.

- 일반적으로 소폭 가격인상의 경우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판매를 거절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오지의 주유소나 소규모 부판점의 경우 판매를 기피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소비자의 사재기 가능성은 인상폭이 아주 크지 않는 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 대리점·직매처가 정유사를 상대로 물량확보 경쟁을 벌이는 것은 사기업간의 문제로서 사회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임
- 가격인하예상시에는 반대로 정유사의 판매부진등이 예상되나, 이러한 가격변동 예상에 경제주체들의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는 측면도 연동제 실시의 주요 이유임
- o 유가연동제를 실시하는 한 매점마다 석을 완벽하게 막을수는 없으나, 유통업체에 대한 홍보 및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고발, 세무 행정 강화 등으로 대처

<석유사업법제22조(행위의금지)>

- 제3호 : 고의로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또는 석유의 출고제한을 하는 행위
- 제5호 :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매점하거나 매석하는 행위 →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 아래 -

- 유종별 세전 제조장반출가격 = 유종별 연동기준가격 $\times (1 + \text{당해월 조정요인})$
- 유종별 세포함 제조장반출가격 = 유종별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 + 특별소비세액(회발유, 경유는 교통세액) + 부가가치세액
- 당해월 조정요인 = (당해월 복합원가 \div 기준복합원가) - 1
- 당해월 복합원가 = (도입원유비 + 운임 + 보험료 + 관세 + 석유사업기금 + 부대비 + 유전스 이자 + 국내차입금 이자 + 연료감모 - 기금환급익) \times 환율 + 정제비 + 가스안전관리기금 + 품검수수료 + 환차손익
 $= \{1.0570 \times \text{FOB} + (1.0390 \text{ FOB} + 0.7742) \times \text{관세율}$
 $+ 0.6061 \times \text{석유사업기금} + 0.7794\} \times \text{환율}$
 $+ 2,960 + 114.2027 \times \text{FOB} \times (\text{직전 3개월간 환차})$
 $\div (\text{직전 3개월간 일수})$
- 기준복합원가 = 17,534원/Bbl

- 주 : 1) 유종별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은 원/㎘로 표시하며, 소숫점이 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유종별 세포함 제조장 반출가격은 원/㎘로 표시하며, 무연회발유, 등유, 저유황경유(0.2W%) 및 경유는 소숫점이 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기타유종은 소숫점이 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당해월 조정요인은 백분율(%)로 표시하며, 소숫점이 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당해월 복합원가는 원/Bbl로 표시하며, 소숫점이 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FOB는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석유정제업자가 통관한 원유의 FOB 가격을 물량가중평균에 의해 계산하여 적용한다. (\$/Bbl로 표시, 소숫점이 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단, FOB가 확정되지 않은 항차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납부시 적용한 수입면장상의 FOB를 적용하며, 상기 당해월 복합원가와 확정 FOB에 의한 당해월 복합원가와의 차이는 익월 복합원가에 가산한다.
 6) 관세율은 직전월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직전월중에 관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직전월 통관원유의 물량가중평균에 의해 계산하여 적용한다.
 (백분율(%)로 표시, 소숫점이 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7) 석유사업기금은 석유사업법 제17의 3 제1항 제1호에 정한 수입금으로 직전월의 수입금 단가를 적용하되, 직전월중에 수입금 단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직전월의 통관원유의 물량가중평균에 의해 계산하여 적용한다.
 (\$/Bbl로 표시, 소숫점이 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8) 환율은 미국달러의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직전월의 날짜 단순평균치를 적용한다. (원/\$로 표시, 소숫점이 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
 9) 직전 3개월간의 환차는 직전월 말일의 환율에서 전전전월 말일의 환율을 뺀 값을 적용한다. (원/\$로 표시, 소숫점이 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
 10) 직전 3개월간 일수는 전전전월 1일부터 직전월 말일까지의 날짜수를 말한다.

원 이하의 벌금(법 25

조)

하는 행위

→ 위반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 26조)

(4) 기타 보완조치

- o 연동제 실시후 당분간 상공자원부 및 석유협회에 유가연동제 애로

신고센터 운영

- 연동제에 따른 가격인하 불이행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등
으로 적극대응

<참고 1> 연동제 고시안

국내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 고시(안)

석유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4. 2.
상공자원부장관

제1조 국내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

① 가격연동 석유제품의 제조장 반출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1. 가격연동 석유제품 및 연동기준 가격

○ 가격연동 석유제품은 아래에서 연동기준가격을 지정한 석유제품을 말하며, 이의 제조장 반출가격은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가격을 그 최고판매 가격으로 한다. 단, 석유정제업자 간 거래 및 한국전력공사에 발전 용으로 공급하는 B-C유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 적용을 배제한다.

2. 가격연동방법

○ 가격연동 석유제품의 제조장 반출 가격의 최고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결정하며, 매월 15일 0시부터 익월 14일 24시까지 적용된다.

② 석유정제업자는 매월 10일까지 직전월 통관원유의 FOB 자료(항차별 통관일자, 물량(Bb1), 단가(\$/Bb1) 및 수입면장)를 대한석유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한석유협회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연동 석유제품의 유종별·유통단계별 가격을 계산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매월 14일까지 발표하여야 한다. 단, 대한석유협회는 가격연동 석유제품의 가격결정에 필

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석유가격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③ 프로판 및 부탄의 제조장반출가격

= 부 칙 =

1. 이 고시는 관보게제와 동시에 시행한다.
2. 동력자원부 고시 제88-23호(1988. 6. 8) 및 이의 개정고시들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단, 상공자원부고시 제

(단위 : 원/kg)

	세 전 가격	세포함가격
프로판(일반용)	190.66	230.70
프로판(도시가스용)	153.63	185.89
부탄(일반용)	190.18	230.12

주 : 석유정제업자간 거래 및 공업원료용 나프타를 대체하는 프로판 및 부탄에 대하여는 상기 최고판매가격 적용을 배제한다.

제2조 석유류제품 판매수수료의 최고액

(단위 : 원/l)

유종별	유종단계별	대리점	주유소 및 판매소
무연휘발유		23.00	37.00
등유		14.00	20.00
저유황경유(0.2W%)		13.00	18.00
경유		13.00	18.00
저유황경질중유(1.0W%)		8.91	-
저유황경질중유(1.6W%)		8.91	-
경질중유		8.91	-
저유황중유(1.0W%)		9.10	-
저유황중유(1.6W%)		9.10	-
중유		9.10	-
저유황B-C유(1.0W%)		9.80	-
저유황B-C유(1.6W%)		9.80	-
B-C유		8.80	-
프로판(일반용)(원/kg)		95.83	148.47
부탄(일반용)(원/kg)		73.88	-

주) 1) 위 수수료중 대리점수수료는 주유소(판매소) 또는 수요자까지의 수송비등 제경비를 포함한 것이며, 프로판의 판매소 수수료 수요자까지의 배달료(76.77원/kg)등 제경비를 포함한 것임

2) 프로판(일반용)의 경우 도서벽지 종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위 수수료외에 적정 추가 수송비를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음.

1993-126호(1993.12.31)에
의한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
고시는 1994.2.14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참고2〉 1980.1~1992.8까지의 실
적을 기준으로 연동제 공식 적용 결
과

검토결과

- 월 1회 가격조정 기준 선택이 바
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연동제의 제도적 특징이 가장 쉽
게 이해되며, 정산요인도 발생하
지 않음
- 다만, 월 4%이상 기준이나 분기
별 1회 기준에 비해 가격변동 회
수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으나, 이
는 적정빈도로 볼 수도 있음
- 일본의 경우 유가자유화된 이후
가격이 평균적으로 월 1회 변동되
고 있음

〈참고3〉 1992.7~1993.12까지 연
동제 실시 Simulation 결과

<전체>

- 판매가격 출발점은 1992.6.25 조
정가격 조정
- 금월 공장도 조정률 = 전월 복합원
가 ÷ 전전월 복합원가
- 1993.1월 연동공식 1회 변경
- 기준 복합원가 변화:
1992년 19,858원/B →
1993년 19,271원/B

	현행	주 2%	월 2~6%	월 4%이상	월 1회	분기 1회
연평균 가격조정회수(회)	1.3	21.9	8.5	5.7	12	4
1회조정시 평균조정률(%)	11.7	2.0	4.9	8.5	4.0	7.9
연평균 정산요인(억원)	3,692	0	1,297	0	0	0

- 주 1) 현행제도에 대한 자료는 실적에 의한 것이며, 다른 Case는 '80.1월~'92.8월간의
도입원유가 및 환율실적을 연동제공식에 적용한 경우임
2) 연평균 정산요인은 연도별 기금징수요인 또는 순실보전요인을 평균한 것이며, 석유
사업기금등에 의한 유가환승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임
3) <주 2%씩>은 매주 변동요인중 2%만 반영하고 2% 초과분은 다음주로 이월
4) <월 4%이상>은 매월 변동요인이 4%미만일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고, 4%이상일
경우 그대로 반영
5) <월 2~6%>는 매월 변동요인이 2~6% 사이에 해당되는 부문만 반영하고, 2%미
만 또는 6%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

<결과>

◦ 유가조정 추이(%)

	최고조정률	최저조정률	평균조정률
공장도 평균	4.32	0.01	1.93
휘발유 소비자가	3.93	0.00	1.90
등 유 소비자가	3.94	0.00	1.87
경 유 소비자가	3.74	0.00	1.88
B-C유 소비자가	3.90	0.01	1.92

『공장도 조정요인』

	F. O. B (\$/B)	환율 (#/\$)	총 비용 (#/B)	조정요인 *
1992.	18.0775	793.77	20131	-
	19.3701	790.21	20999	4.32
	18.9389	792.39	20556	-2.11
	18.5997	788.49	20007	-2.67
	18.7330	786.80	20070	0.31
	18.6407	787.11	20072	0.01
	17.8220	791.76	19575	-2.48
	16.8450	794.79	18906	-3.23
	15.9719	799.55	18204	-3.71
	16.4046	796.38	18425	1.21
	16.8235	798.88	18749	1.76
	16.8500	803.06	18954	1.09
1993.	16.6896	805.86	18942	-0.06
	15.9790	809.44	18427	-2.72
	15.1337	811.99	17794	-3.44
	15.1135	811.78	17727	-0.37
	15.1136	813.26	17683	-0.25
	14.6880	810.28	17710	-2.68
	14.1662	812.55	16797	-2.40

* 당해월에 발생된 조정요인은 다음월의 유가조정률로 적용함